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징수 위탁의 요건과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강제징수의 세무서 위탁 구체화(안 제9조의4)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수 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강제징수 위탁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상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능 사유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의4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상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능 사유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 ----- ----- ----- ----- ----- ----- ----- ----- ----- ----- --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능 사유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

-----.

③ -----

-----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능 사유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

1.·2. (생략) ④ ~ ⑥ (생략)	<u>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1.·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297